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12. 21 선고 2022가단11813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영, 강영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안혜영, 이경령

변 론 종 결 2022. 11. 16.

판 결 선 고 2022. 12. 2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2/9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21. 10. 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D 주식회사는 2011. 1. 13. C에게 25,000,000원을 계약만료일 2013. 9. 11., 약정이자율 연 36.5%, 연체이자율 연 43.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후 D 주식회사는 2014. 12. 31. E 주식회사에, E 주식회사는 2018. 10. 26. 원고에게 위 C에 대한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각 양도일 무렵 C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양수금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827997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20. 1. 17. “C은 원고에게 31,511,977원 및 그중 9,671,108원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0. 2. 15. 확정되었다.

다. C의 부 F은 2002. 12. 15.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 한다),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G와 자녀들인 H, C, 피고가 있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은 망인의 소유였는데, 그중 토지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21. 10.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관할등기소인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에 제출되었고, 2021. 10. 26. 피고 앞으로 2002. 12. 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가 2021. 10. 26.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1980. 10. 30.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7,000,000원, 근저당권자 I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2021. 10. 26.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2. 12. 15.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날인 2021. 10. 6. 각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조합에 대한 2022. 9. 21.자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한 2021. 10.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형식상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실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망인의 사망일인 2002. 12. 15.경 있었다.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가진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어느 시점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는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할 것이되(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 등 참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2021. 10. 6.자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처분문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02. 12. 15. 사망하였고, 토지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2021. 10. 6. 작성되었는데, 망인 사망 후 약 19년이 경과한 2021년에 이르러서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 대상에 토지만 기재되어 있는 등 위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북 군위군 K리에 있는 토지와 1980년에 사용승인이 된 위 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고¹⁾, 망인의 사망 당시 망인의 배우자인 G와 피고가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과 G를 돌본 피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G, H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는 2011. 9. 23. C의 주식회사 L에 대한 채무 7,331,283원²⁾을 대위변제하였는바, 피고가 단독상속한 재산이 있으므로,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주었다고 보이고, C 또한 그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하는 등으로 돈을 마련하여 채무를 변제하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설사 피고의 대위변제일까지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대위변제일 무렵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④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은 노후되어 2015. 6.경 지붕수리를 하였는데 지붕수리비를 모두 피고가 부담하는 등으로 피고가 관리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합의는 토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합의서가 작성된 2021. 10. 6.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일인 2002. 12. 15.경 늦어도 피고의 대위변제일인 2011. 9. 23.경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 C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합의일인 2002. 12. 15. 내지 2011. 9. 23.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도과한 이후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부동산 목록

1. 경상북도 군위군 대 251㎡

2. 경상북도 군위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군위군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단독주택 24.75㎡

부속건물 시멘트블록조 슬라브지붕 단층창고 34.96㎡

돌담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창고 14.64㎡

1) 2021. 1. 1. 기준 토지 공시지가 12,675,500원

2)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2/9 지분의 가액을 넘는 것으로 보인다.